



1. 인증마크의 사용과 홍보 방법

- 1) 인증등록 후에는 관련 법규 및 KAI의 기준에 따라 인증에 대한 사실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.
- 2) 인증기업은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수상·인증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공정거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3) 인증기업은 인증기업 준수사항을 지키지 못하여 인증이 정지 또는 취소가 확정되는 경우 인증사실을 인용한 모든 광고 또는 홍보를 계속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4) 인증마크 사용 및 홍보 기준
 - (1) 인증표시는 인증서 발행일로부터 지정된 유효기간 내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 - (2) 인증이 인증범위 이외의 활동에도 적용됨을 암시하면 안 됩니다.
 - (3) 인증기관 및/또는 인증시스템을 분쟁에 휘말리게 하여 공공 및 일반대중의 신임을 상실케 하는 방식으로 인증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.
 - (4) 인증기업은 인증범위가 축소되는 경우 모든 관련된 홍보물을 수정하여야 합니다.
 - (5) 인증마크는 제품 및 단위포장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, 세부 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구 분	제품 또는 단위포장	대형박스 등 단위포장의 포장	광고 또는 홍보물
마크+설명문구 없음	사용불가	사용불가	사용가능
마크+설명문구 있음	사용불가	사용가능	사용가능

- *제품 자체 또는 용기 등에 들어있는 단위포장 제품, 거래 샘플 또는 기타 제품 적합성에 관한 진술서, 시험/분석활동의 경우 시험/분석보고서(예:시험성적서, 교정성적서,검사성적서)에는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없으며, 깃발, 건물 또는 차량에도 직접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.
- *제품의 안전 또는 유통의 편의성 등을 제품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대형박스 등 외부포장으로 최종 사용자에게는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단위포장 등에는 사용불가 합니다.
- *대형박스 등 단위포장의 포장에 마크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, 인증기업의 제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명판, 명함, 브로셔, 문서, 송장, 광고 등에 인증마크, 인증기관명, 인증표준, 인증번호 등을 사용하여 인증을 받은 기업임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.
- *인증문구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사용 가능합니다.
예시) “KS Q ISO 9001에 대한 적합성을 인증 받은 품질경영시스템을 갖춘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입니다.”
- *제품포장은 제품을 해체하거나 파손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, 동반되는 정보는 분리하여 사용하거나 쉽게 떼어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. 유형 라벨이나 식별판은 제품의 일부로 간주되며, 문구는 제품, 프로세스나 서비스가 그러한 방식으로 인증 받았음을 어떤 방법으로도 암시해서는 안 됩니다.
문구 사용 시 다음을 포함하여야 합니다.
 - 인증된 고객의 식별정보(예 : 브랜드나 회사명)
 - 경영시스템 유형(예 : 품질, 환경) 및 해당되는 표준
 - 인증서를 발행한 KAI(케이에이아이인증원) 명칭
- (6) 인증마크는 인증서에 명시된 인증범위와 관련 있는 인쇄물, 광고물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, 종합 광고물인 경우 반드시 인증범위를 광고물에 명시하여야 합니다.
- (7) 제품인증으로 오인될 수 있는 과대광고 문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.(예 : 세계적 품질확보, 국내 최고의 품질우위 확보 등)
- (8) 인증마크 사용요령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은 KAI에 문의하여 서면 승인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.

5) 인증마크 오용 시 조치

- (1) 인증기업의 인증 마크 사용 상태가 기준에 부적절한 경우 시정조치 내용 및 기한이 명시된 KAI의 시정조치요구서가 송부됩니다.
- (2) 인증기업은 시정조치요구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요구된 시정조치내용에 따라 시정조치 결과를 KAI에 제출해야 합니다.
- (3)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아 기한 내 시정조치를 완료하지 않으면 인증정지 또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.
- (4) 인증정지 또는 취소 이후에도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또는 인증을 받지 않은 조직이 인증을 받았다고 허위로 인증표시를 사용하는 경우 표시공과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[별표]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거하여 처분됩니다.

6) 인증마크 사용 요령

- (1) 인정마크는 다음과 같습니다.



- *인정마크는 원본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, 인정마크의 크기는 최소 15mm이상이 되어야 합니다.(가로 15mm, 세로 10mm)
- *인정마크의 색상은 아래 표시된 바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불가피한 경우에는 흑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.

그림1. IAS인정마크

- (2) 인정마크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, KAI의 마크와 동시에 사용되어야 합니다. 인정마크와 인증마크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인정마크를 우측 또는 하단에 위치하도록 배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



그림2. 좌우대칭의 경우 그림3. 상하 대칭의 경우

- (3) 인증마크 하단에 해당 인증표준을 명기하여 사용 가능합니다.



- (4) KAI인증마크는 원본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.

- 7) IAF MLA 마크는 인증기관이 사용하는 것으로, 인증기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 인증서에 표기된 IAF MLA 마크는 IAF(국제인증포럼) 회원으로 가입된 인정기구(예 : IAS)로부터 인정받은 인증기관(KAI)이 발행한 기업의 인증서는 해당 인정기구의 국가에서 인증으로서 동일한 효력을 보장합니다.

